

【 10 】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8 . .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정이유

- 2006. 1.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자격을 정함(안 제2조)
-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함(안 제4조제1항)
-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 하도록 함 (안 제9조)
- 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 중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보안등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로 정함 (안 제11조)
- 마.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기술심사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함 (안 제12조)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을 말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당당으로, 서기는 심의대상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노인시설, 영유아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과 계약담당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70,000	회의가 2시간이상 초과될 시에는 30,000원 추가지급
기술검토 수당 기술검토 수당	200,000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또는 기술검토보고서 제출시 지급
주민참여감독자 주민참여감독자	10,000(1일)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관 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2005.8.4 법률 제7672호]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5.30 대통령령 제19494호]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총소요예산액 : 68,800천원

-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70,000\text{원} \times 8\text{인} \times 30\text{회} = 16,800\text{천 원}$$

- 기술검토 수당

$$200,000\text{원} \times 2\text{인} \times 30\text{회} = 12,000\text{천 원}$$

-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10,000\text{원} \times 1\text{인} \times 20\text{일} \times 4\text{월} \times 50\text{회} = 40,000\text{천 원}$$